#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38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박상혁 • 박용갑 • 한민수

김주영 • 박희승 • 이연희

임광현 • 박균택 • 박홍근

염태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 여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벌과 관련된 급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경력 등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발생이 복무 중의 사유와 무관하다 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 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벌 등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사유에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등).

법률 제 호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를 각각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무 중의 사유"를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1항제1 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한 행위로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	제한) ①
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	
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	
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	
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	1(직무와 관련
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	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
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
<u>외한다)</u> 로 금고 이상의 형이	외한다) 또는 공무원 재직 중
확정된 경우	의 사유(군인으로 복무한 경
	럭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
	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	③(직무와 관

편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 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 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 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 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하여 지급한다.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
(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
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
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
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

런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
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
한다) 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
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
한 경우에 한한다)
,
 ④ <u>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u>
④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
<ul><li>④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li><li>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li></ul>
<ul><li>④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li><li>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li><li>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li></ul>
<ul> <li>④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li> <li>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li> <li>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li> <li>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li> </ul>
<ul> <li>④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li> <li>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li> <li>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li> <li>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li> </ul>
<ul> <li>④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li> <li>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li> <li>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li> <li>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li> </ul>
<ul> <li>④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li> <li>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li> <li>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li> <li>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li> </ul>
<ul> <li>④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li> <li>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li> <li>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li> <li>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li> </ul>
<ul> <li>④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li> <li>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li> <li>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li> <li>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li> </ul>

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	